

## 교원 타교출강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.)전임교원의 타교 출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타교 출강이라 함은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본교 이외의 타 대학 및 단체에 강의, 직무 훈련 등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교육을 담당함을 말한다.

**제3조(허가)** 타교에 출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조(허가 조건)** 타교출강은 다음 각 호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본교와 타교와의 전체 강의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, 타교 강의과목은 1 과목으로 한다. 단, 출강이 없는 온라인 강의는 제외한다. (2013.2.25.개정)
2. 본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

**제5조(무단 출강자 조치)** 총장의 허가 없이 타교에 출강할 시 총장은 출강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